

##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2.>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2019. 12. 1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제1호

### ○ 첨부제외 사유

-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재가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6조(서비스 내용)에 따른 사업은 현재 도 내 19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또한 안 제6조제4호에 따른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대상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50
----------	-----

2021. 6. 23.(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6월 10일

-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욱 의원)

가. 제안사유

- 2017년 소라넷 사건,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비롯해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등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이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유포, 공유, 소지되는 등 성범죄 수법이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진화되어 가고 있음.

-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패륜적 행위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동영상 등의 공유·유포로 인해 2차 피해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 길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시간적·공간적 피해 확산이 심각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관련 규정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조성하고, 도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디지털성범죄 유형>

구분	유형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비동의 유포, 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 공유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 형법 모욕죄 제311조

※자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2020. 9. 재인용

## 나. 주요내용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대검찰청 「2020 범죄분석」 자료 중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를 보면,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2010년에는 1,153건으로 전체범죄 중 5.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9년은 5,893건(18.4%)으로 지난 10년간 유형별 범죄 건수 중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도 소폭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0년~2019년)>

(단위 : 건(%))

연도	강간 <sup>9</sup>	강제 추행	강간등 <sup>10</sup>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계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584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20,168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22,376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7
2014	5,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32,824
2018	5,826 (18.1)	15,672 (48.8)	182 (0.6)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32,104
2019	5,845 (18.2)	15,766 (49.2)	157 (0.5)	2 (0.0)	653 (2.0)	42 (0.1)	5,893 (18.4)	685 (2.1)	1,454 (4.5)	1,532 (4.8)	32,029

※자료: 2020범죄분석, 대검찰청(<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 센터에서 2018년 4월30일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 발생·처리한 디지털성범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18. 4. 30. ~ ‘20. 9. 30., 건수)

연도	지원건수(합계)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2018	33,921	4,787	28,879	203	52
2019	101,378	5,735	95,083	500	60
2020	100,468	7,706	92,347	376	36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성과와 과제”, 제4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2020.11.25.

- 충북의 경우, 별도로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충북1366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충북의 경우도 100여건(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31일까지)의 디지털성범죄를 접수 처리하였고, 빈도가 많은 순서는 불법촬영 > 유포불안 > 몸캠 및 해킹 > 사이버 괴롭힘 및 성희롱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관련 규정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타 시·도의 경우, 대전, 경기, 세종, 전남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함.
- 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의함.
  - 현행 법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별도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도 차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
  -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지닌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지원과 더불어 사전 예방 차원의 도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이 중요한 만큼 이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 및 제7조**는 피해자 지원 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해 규정함.
  - 지원사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신고 접수·상담, 피해자 의료, 수사시관·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 영상 등 유포 및 살제 지원 현황 모니터링,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 중복의 경우, 현재 여성재단 1366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 신고, 지원서비스 연계(상담소, 소송대리지원, 의료비 지원등), 유포 차단(삭제요청); 방심위 심의신청,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청,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도움 요청·협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사업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따른 교육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교육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예방, 신고 및 피해지원을 위한 홍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부산시의 경우 1366에서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기타(의료, 심리치유,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등 추진 중이며,
- 경기도는 여성가족재단 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2명)를 설치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 중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 이에 충북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군, 도교육청, 도경찰청, 의료기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디지털 성착취물)을 촬영·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디지털성범죄는 익명성에 숨어 악랄하게 피해자의 '성(性)'을 착취하며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그 피해가 2차, 3차로 확산될 수 있음.
  - 즉 범죄형태가 기존의 성범죄와 유형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히 성착취 구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및 안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과 같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0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발 의 자 : 이상욱, 박형용, 이숙애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송미애

**1. 제안이유**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나.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라.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60호
- 다. 협 의 : 여성가족정책관
- 라.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지원)**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
  4.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 유포 및 삭제 지원 현황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충청북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군,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5조(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 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5. 29.,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14. 5. 28.>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1. 12.>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 2. 비용 발생 요인

-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및 피해자지원에 소요되는 인건비·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 3. 관련조문

- 안 제5조(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 안 제6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안 제7조(도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기준으로 하되,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 상승률 고려하여 산출

- 2022년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국비매칭)

※ 2021년 7개 광역시도 지정 운영중(전국 확대 계획)

- 2024년부터 디지털성범죄지역센터 운영계획(종사자 2인→4~6인 확대)

※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예방지원센터(6명), 경기도 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 운영(18명)

나. 추계 결과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901,8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901,800	84,000	96,800	180,000	266,000	275,000

※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 별첨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b>세 입</b>	84,000	96,800	180,000	266,000	275,000	901,800	
국비	42,800	43,400	44,900	46,000	51,000	228,100	
도비	41,200	53,400	135,100	220,000	224,000	673,700	
<b>세 출</b>	84,000	96,800	180,000	266,000	275,000	901,800	
상담 종사자 인건비	72,000	74,800	155,000	241,000	250,000	792,800	
피해자 법률·의료·수사지원 등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80,000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2,000	2,000	5,000	5,000	5,000	19,000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	10,000	-	-	-	10,000	
<b>재원 조달</b>	<b>84,000</b>	<b>96,800</b>	<b>180,000</b>	<b>266,000</b>	<b>275,000</b>	<b>901,800</b>	
의존 재원	소 계	42,800	43,400	44,900	46,000	51,000	228,100
	보조금	42,800	43,400	44,900	46,000	51,000	228,100
자체 수입	소 계	41,200	53,400	135,100	220,000	224,000	673,700
	지방세	41,200	53,400	135,100	220,000	224,000	673,700